

2008.7.24(목) 11:00
第129回 忠州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 會 議

條例案審查報告書

- ①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 ②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③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

總務委員會

條例案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①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2008.7.16	2008.7.16	2008.7.21	2008.7.21	기획감사과장
②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세정과장
③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	"	"	"	"	관광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 및 승인,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브랜드 슬로건의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브랜드 슬로건” 이란 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한 ‘Good 충주’를 말한다.(안 제2조)

- 나. 브랜드 슬로건은 시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안 제5조)
- 다.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안 제6조)
- 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뉴얼에 예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 제7조)
- 마.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안 제9조)

나.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급격한 세액 상승이 불가피한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부담을 경감 함으로써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하거나 이전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함(안 제18조 제1호)

다. 충주시 무술연맹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술연맹이 국제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계무술연맹” 이라 함은 세계무술연맹협약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함.(안 제2조)

나. 충주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맹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세계무술연맹은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만료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4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 ‘브랜드 슬로건’이라 함은 간결하고 함축된 문구를 통해 일정한 기업이나 단체 등이 조직 내의 힘을 모으고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려는 도구로서 CI(Corporate Identity, 기업의 이미지 통합)를 정립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hi! 서울', 'Bio 충북', 'It's 대전', 'feel 경남', 'Blue City 거제', '녹차수도 보성', 'Dream Hub 군산', 'Aha! 순천', '참 진주', 'beautiful 경주', '아리아리 정선', 등 다양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특성을 잘 표현하여 가치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충주시의 경우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통해 Great, Opportunity, Open, Development의 머릿글자를 조합한 'GOOD충주'를 슬로건으로 선정하였으며,

광대한 발전가능성이 있고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며 기업에게 열려있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도시 충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7월 8일 '시민의 날'에 선포식을 갖은 바 있음.

- 본 조례안은 충주시에서 선정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 방안과 관리 방법을 정하고 브랜드 슬로건이 충주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음.
-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직접 사용자의 상표나 의장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브랜드 슬로건이 시민들과 밀접하고 유용하게 활용되고 나아가 충주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무료로 한 것은 개발목적에 맞는 적정한 판단이라 생각되나,

개발한 브랜드 슬로건이 다양하고 자랑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홍보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안에 홍보 및 육성방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음.

-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브랜드 슬로건 사용승인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는 바, 사용신청서의 내용으로 짐작하여 볼 때 사용승인 여부의 판단이 어렵거나 검토할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만큼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돋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용신청을 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경우 제5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2호에 규정된 시 또는 브랜드슬로건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거나 손상시킨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판단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규칙 등에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 조종 자동차에 한해 세율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차종은 현재 단종된 상태로 충주시에는 2008년 이후 신규로 등록된 차량이 없는 상황이며 150여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동 차종은 버스형태의 승용차로 주로 생업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세액을 감면 코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2000CC 승용차를 예로 들어보면 비감면 차량은 40만원의 세액이 부과되나 66%감면인 경우는 136,000원, 본 감면 조항을 적용할 경우는 6만5천원만 부과하게 되므로 동종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술 연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기구로 육성하여 충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무술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충주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원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 세계무술연맹은 2000년부터 개최된 세계무술축제가 계기가 되어 26개국 28개 단체가 2002년 10월 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발족되었고,

창립 취지는 세계무술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무술단체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무술에 대한 정보교환과 조사 연구 활동, 무술축제 지원 등이 목적이며 현재의 회원은 32개국 33개 단체이며 2008년 6월 2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승인을 받았음.

- 조례안 검토결과

1. 조례제정의 타당성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됨.

- “세계무술연맹”이라는 단체가 공익단체로서의 법적인정을 받은 단체인지 살펴보면,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08년 7월 10일 등록을 함으로써 “세계무술연맹”은 법적으로 공익단체에 해당된다 하겠음.

- “세계무술연맹”의 사무가 충주시 소관사무에 속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연맹의 정관 제4조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1) 전통무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교환 및 전파
- 2) 세미나와 학술회의 등 조사연구 사업
- 3) 전통무술 시범 및 경연대회 개최
- 4) 유네스코 등의 국제협력사업
-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으로 규정되어 있음.

- “세계무술연맹”이라는 조직이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계기로 결성이 되었고,

위 사업내용들로 보아 “세계무술연맹”의 설립목적이 세계 각국의 전통무술단체간의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정의의 가치관 정립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있지만,

무술축제를 직접 추진하는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있고 “세계무술연맹”의 정관에 있는 사업들 모두가 충주시 본연의 사무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2. 보조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 충주시의 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이의 운영과 관계된 일체의 비용을 시의 판단에 따라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나
- “세계무술연맹”의 경우 설치근거가 충주시의 조례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조례로 설치근거를 정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도 아닌 만큼 “세계무술연맹”에 대한 충주시의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해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지원범위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에 따라 “세계무술연맹”에 지원이 이루질 경우 연맹의 입지강화와 무술축제에 대한 기여도 등에 의해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이 “충주중원문화관광재단”과 점진적으로 이원화 되고 새로운 갈등이 조성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두 단체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 답변 요지

가.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질의 : 브랜드 슬로건 사용 범위는?

▶답변 :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범위가 제한되지 않음

◎질의 : 브랜드 슬로건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라 함은 어떤 경우인가?

▶답변 : 유홍업소, 전단지 등에 사용되는 경우임. 규칙에 상세하게 정하도록 하겠음.

◎질의 : 7Pride의 사용은 계속하는가?

▶답변 : 현재 사용 중인 포장재 등이 소진될 때까지는 사용되어야 할 것임.

◎질의 : 홍보계획은?

▶답변 : 각 실과소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활용하고 미흡할 경우 용역 등을 실시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음.

◎질의 : 교육청에서 다른 이미지의 Good충주를 이미 사용 중에 있음.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데 통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답변 :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나.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다.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

◎질의 : 세계무술연맹과 중원문화관광재단 두 단체간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답변 :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의 : 세계무술연맹이 무술축제를 담당하게 되는가?

▶답변 : 그럴 계획임. 추후 보고토록 하겠음.

◎질의 : 세계무술연맹의 운영재원은?

▶답변 : 충주시의 보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NGO 지위를 획득 하게 되면 미미하지만 자체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될 것임.

◎질의 : 무술연맹에 가입된 33개 무술단체가 각 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답변 : 50%정도는 대표성을 갖고 있음.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었음.

5. 심사결과

- | | |
|-----------------------|--------|
| 가.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 : 원안가결 |
| 나.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다.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안 | : 심사보류 |

6. 별 임

- 가.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관리 조례안 1부.
나.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